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4월 25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4월 15일, 이인식, 정재동, 도병두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4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4월 25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긴급히 필요한 의약품의 안전한 제공 및 의약품의 정확한 복약 지도 등을 통한 의약품 오·남용 예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의약품 안정사용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(안 제4조)
-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(안 제5조)

-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및 지원금 환수(안 제6조 및 제7조)
-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홍보(안 제8조 및 제9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심야 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의약품 안정사용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9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요내용은
  -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
  - 안 제3조에서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 제공, 공공심야약국의 지역별 균형 운영,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·협회 등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
  -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비용의 지원에 대하여
  - 안 제5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에 대하여
  -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에 대하여
  -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에 대하여
  - 안 제8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
- 「약사법」 제21조의 3 신설로(2024. 4. 19 시행) 구청장의 공공심야약국 지

정에 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되었으며,

- 현재 서울시와 9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우리 구에서는 시흥5동에 1개소만 심야약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가산동 및 독산동 지역에 추가 지정·운영이 필요해 보임.
- 본 조례 제정안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